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9나1838 상표권 등 침해금지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석지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박영희, 신정무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합4166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3.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2020. 12. 24.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12,16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9.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관광숙박서비스업, 호텔서비스업, 호텔숙박시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호텔에서 사용, 보관 중인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이 표시된 수건, 가운데서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을 삭제, 제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44,7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9. 7. 1.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12,16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등록서비스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관련한 각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또는 (카)목<sup>1)</sup>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청구(장래이행청구 포함)를 선택적으로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등록서비스표와 관련한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sup>2)</sup>, 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금원지급청구 중 장래이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관련한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조성물 폐기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상호권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손해배상청구와 다른 손해배상청구들은 서로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의 병합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원고가 기존 청구와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심판의 순서를 정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 항소취지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과 동일하다.

2) 원고는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2020.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관련한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포장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9. 7. 1.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660,5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sup>3)</sup>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전제된 사실관계

####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058 일대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8. 4. 18. 설립된 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이다.

2) 피고는 2002. 12.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년 무렵부터 F시 G구 H가 I에서 'J호텔' 또는 'J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10. 11. 피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피고 호텔의 명칭도 'D'로 변경하였고, 2019. 10. 2. 무렵 다시 피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피고 호텔의 명칭도 'C'로 변경하여 피고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금원지급청구 중 장래이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나. 원고의 서비스표권 등

### 1) 원고의 서비스표권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등록서비스표권'이라 한다).

### 2) 원고의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무렵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의 옛 군부대 부지에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는바, K이 위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8. 4. 18.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4. 18. 상호를 'L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 등을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M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다. 피고의 행위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11월 및 2017년 1월 무렵 각 서비스표를 각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나(이하 피고의 서비스표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피고 제○서비스표'라 한다), 서비스표등록 이후 해당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포기하였다.

순번	서비스표	등록사항	
1	엘시티	출원일	2016. 11. 21.
		등록일	2017. 2. 28.
		등록번호	제1236416호
		지정서비스업	제43류(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권리말소등록일	2019. 11. 29.(등록원인 : 포기)

2		출원일	2017. 1. 24.
		등록일	2017. 6. 12.
		등록번호	제1260002호
		지정서비스업	제43류(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권리말소등록일	2018. 1. 31.(등록원인 : 포기)

2) 피고는 2017년 9월 무렵 피고 호텔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는바, 2017년 2월 무렵부터 리모델링 중인 피고 호텔 건물에 설치한 선전광고물 등에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표장(이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표장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리모델링 후에도 같은 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다가, 피고 제2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포기한 이후인 2018년 2월 무렵부터는 피고 호텔의 영업시설 내 각종 표지판, 외부 간판, 각종 인쇄물,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 전단지 기타 선전광고물 등에 이 사건 제3, 4 사용표장을 각 표시 또는 부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9. 10. 2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인 2019년 11월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사용표장 대신 위 변경된 상호와 동일한 '스카이뷰' 내지 그 영문

자인 'SKY VIEW'가 포함된 표장인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라.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7. 12. 7.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사용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666호, 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2018. 2. 12. 담

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98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8. 4. 2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라5083호로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9. 27.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마652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11. 14.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7, 20 내지 26, 34 내지 45, 47호증, 을 제1, 3, 4, 7, 11, 14,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V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3월 무렵부터 이 사건 M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해왔는바, 원고의 위 표장은 부산·경남 지역을 넘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6년 11월 무렵부터 원고의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2019년 10월 무렵 피고의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피고 호텔의 객실 내 가운과 수건에 표시하여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의 위 표장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할 무렵에 피고의 영업지역인 F 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표장이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원고의 위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과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은 업종이 서로 다르고 고객층도 중복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경업·경합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한 것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이 일어날 여지도 없고, 2019. 10. 2. 피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피고 호텔의 건물 외부 및 시설물, 홍보 자료, 인터넷 웹사이트의 표장도 변경하였고, 피고 제1, 2서비스포의 각 서비스포권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8. 'M' 관련 표장이 표시된 객실 가운과 수건을 모두 교체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표시된 객실 가운과 수건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룬다.

### [판단]

####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 2) 원고 제2표장의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전제사실과 갑 제9 내지 16, 25,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M 사업은 전체 3조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이 사건 M 사업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85층 규모의 주거타워 2개 동과 101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1개 동의 초고층 건물이 건설되었는데, 주거타워A, B동은 각 339m와 333m 높이로 주거단지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고, 랜드마크 타워는 411m 높이로 서울 N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② 원고는 2015년 10월 무렵부터 공동주택(주거타워A, B)인 'M 더 샵'을 분양하였고, 2016년 7월 무렵부터 랜드마크 타워 20층 내지 94층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인 'M 더 레지던스'를 분양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서비스표등록출원한 이후인 2013년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하 '원고 제1표장'이라 한다), 이 사

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하 '원고 제2표장'이라 한다) 및 원고 제

2표장을 특정 색상으로 변형한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M 사업을 광고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하여 KBS, MBC 등 지상파와 라디오 광고,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김해공항, 부산 KTX역, 부산 주요거점(해운대 교차로, 미남 교차로 등)에서의 전광판 광고, 차량 외벽광고, 울산 옥탑 광고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2013년 2,493,416,200원, 2014년 1,091,028,400원, 2015년 15,921,715,552원, 2016년 5,871,416,912원을 지출하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총 25,377,577,063원의 광고 및 홍보비를 지출하였다.

⑤ 2013년에는 이 사건 M 사업으로 건설되는 'M' 해운대관광리조트가 O이 주최하는 '2013년 하반기 환경 주거문화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원고가 P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품질혁신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⑥ 2011년 무렵 조선일보의 특집기사와 부산일보 등에 이 사건 M 사업이 소

개되었고, 2013년 무렵부터 연합뉴스, 한국일보, O, 부산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에 이 사건 M 사업에 관하여 'M, 부산의 랜드마크', '해운대 101층 리조트', '부산 마천루 해운대 관광리조트', '해운대 M' 등의 문구가 사용된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M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호텔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제2표장의 사용기간·방법·태양 및 원고의 광고비 지출 규모, 광고 방법, 수상 경력 등에다가 이 사건 M 사업의 입지, 완공될 건물들의 높이, 규모나 그 내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원고 제2표장은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2표장은 2017년 5월 무렵 국내 또는 적어도 부산 및 부산과 인접한 경남 지역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부동산 분양업 등에 관하여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제2표장과 피고의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원고 제2표장 '  '은 도형 부분 '  '과 문자 부분 'lct'이 결합된 표장



인바, 위 각 부분은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lct' 부분만으로도 관찰이 가능하고, 위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영문자 'lct'에 의하여 'M' 또는 '엘씨티'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사용표장 '  '은 도형 부분 '  '과 문자 부분 'lct'





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원고 제2표장 '  '과 색채가 다소 상이하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양 표장 중 각 문자 부분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양 표장은 모두 'M' 또는 '엘씨티'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다.



그리고 원고 제2표장 '  '과 이 사건 제3사용표장 '  '은 도형의 구성 여부 및 문자 부분의 색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고 제2표장은 'Lct' 부분만으로도 관찰이 가능한바, 양 표장은 그 문자 부분의 구성 문자 및 글자체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원고 제2표장의 위 문자 부분과 위 이 사건 제3사용표장은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지만, 양 표장은 모두 'M' 또는 '엘씨티'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다.



또한 원고 제2표장 '  '과 이 사건 제4사용표장 '  '는 도형의 구성 여부 및 문자 부분의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고 제2표장은 'Lct' 부분만으로도 관찰이 가능한바,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도안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서체로 표시되어 서체의 차이로 인한 시각적 차별성이 미약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양 표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원고 제2표장의 위 문자 부분과 위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은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지만, 양 표장은 모두 'M' 또는 '엘씨티'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

의 영업상 활동과 피고의 영업에 대한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 제2표장과 동일·유사하다.

#### 4) 영업주체의 혼동가능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8, 27, 29 내지 31, 33, 4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2표장의 주지성 및 식별력의 정도, 표장의 유사 정도, 영업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피고의 악의 등을 고려할 때 영업주체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2표장은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과 서로 동일·유사하다. 한편 원고 제2표장이 부동산분양업 등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장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sup>4)</sup>

② 원고의 이 사건 M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었고, 피고 호텔은 부산 지역과 인접한 경남 지역(F시 G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③ 비록 원고의 이 사건 M 사업은 관광리조트를 개발하여 분양 등을 하는 것이고, 피고의 영업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숙박 중심의 호텔 서비스 수요에서 장기투숙 형태의 호텔 서비스 수요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부동산 분양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4) 피고는 원고 제2표장의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제2표장과 동일한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서비스표등록이 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M'라는 명칭이 포함된 아파트로는 Q시 소재 '한양수자인M아파트' 정도만 검색되는 점, ③ 비록 부산 지역에 'R', 'S' 등 그 아파트 명칭에 '시티'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2표장은 도형 부분  과 문자 부분 'lct'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앞서 본 아파트 명칭과 구분되어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와 가전을 미리 모두 구비해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특급 호텔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그 입주민에게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라는 주거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호텔사업자가 호텔 건물의 객실을 분양하고, 그 수분양자에게 부대시설과 관련한 호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M 사업으로 건축한 랜드마크 타워 건물의 20층부터 94층에 'M 더 레지던스'를 조성하여 2016년 7월 무렵부터 이를 분양하였고, 2016. 7. 13.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사이에 T가 위 'M 더 레지던스'의 입주자에게 특급 호텔 수준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M 더 레지던스'는 내부 인테리어와 가전기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된 구분 소유 호실로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호텔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원고의 'M 더 레지던스'와 피고 호텔은 해당 방실을 점유하는 근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제공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층이 어느 정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sup>5)</sup>

⑤ 한편 원고는 2016. 5. 16. T와 사이에 원고가 위 랜드마크 타워 중 일부에 260실 내외 규모의 객실과 연회장, 회의실, 식음시설, 휘트니스 및 스파 등을 갖춘 5성급 호텔 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을 유치하였는바, 비록 위 호텔이 영업표지로 원고 제2표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호텔이 원고 제2표장이 사용된 원고의 복합리조트단지 내에 위치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M 소재 호텔'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sup>6)</sup> 이에 따라 원고가 호텔


5)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M 호텔'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피고 호텔과 원고의 "M 더 레지던스"가 함께 검색되기도 하였고(갑 제33, 43호증 참조), 원고의 'M 더 레지던스'가 'M 레지던스' 내지 '그랜드 M 레지던스'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호텔예약대행서비스 제공업체에 등록되어 숙박서비스에 제공되기도 하였다(갑 제43호증 참조).

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는 수요자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피고가 피고 호텔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재개한 이후인 2017. 10. 25.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제2사용표장과 관련하여 일부 고객이 원고의 영업표지로 오인하여 이에 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 제2사용표장 등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제2사용표장 등이 공사가림막에 표시된 피고 호텔의 리모델링 현장을 보고 피고 호텔을 원고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원고 제2표장이 널리 알려진 이후, 원고 제2표장과 색채만 다르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제2사용표장 '  '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 제2표

장과 동일성이 있는 표장으로서 원고가 사용하였던 표장 '  '과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2사용표장과 동일한 피고 제2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을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으로 정하여 출원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다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사용표장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서비스표권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5) 피고가 2019년 1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타인의 표장 사용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타인의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6)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M 호텔'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T 운영의 위 호텔인 'U 부산'이 '부산 해운대 M 위치 호텔'로 소개되어 게시되기도 하였다(갑 제43호증 참조).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 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8,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9년 11월 이후인 2019. 12. 25. 무렵(갑 제38호증), 2020. 6. 25. 무렵(갑 제40호증), 2020년 7월 무렵(갑 제41호증) 피고 호텔에 투숙한 투숙객들이 각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 호텔 투숙 후기에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표시된 가운데나 수건이 피고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전체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9년 11월 이후에도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영업주체의 식별을 위한 표지로서 인식되고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9. 10. 2.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고, 2019년 11월 무렵에는 피고 호텔의 영업시설 내 각종 표지판, 외부 간판, 각종 인쇄물,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 전단지 기타 선전광고물 등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각 사용표장 대신 위 변경된 상호와 동일한 '스카이뷰' 내지 그 영문자인 'SKY VIEW'가 포함된 표장인

  등의 표장을 표시 및 부착하여 피고 호텔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위 상호 변경 이후로서 피고 제1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 포기 하루 전인 2019. 11. 28. 'SKY VIEW' 문자가 포함된 표장이 표시된 가운 200개 및 수건 1,000개를 새로 주문하여 객실에 비치하였는바, 대부분의 객실에는 이와 같이 교체된 가운 및 수건이 비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가운, 수건을 수거하지 않아 피고 호텔 객실 일부에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표시된 수건이나 가운이 비치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표시된 가운이나 수건은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객실 내 옷장이나 욕실에 비치되었을 뿐이다.

③ 위와 같이 피고가 호텔 간판 등 호텔 전면에 피고의 변경된 상호와 동일한 '스카이뷰' 등의 별도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의 내부 시설물, 홍보자료, 비품 등 도에 이와 동일한 표장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은 이와 같이 변경된 표장을 피고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의 피고 호텔 투숙 후기에는 피고 호텔이 명시적으로 '스카이뷰호텔'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후기(갑 제38, 41호증)에는 피고 호텔의 구 상호가 'M호텔'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6) 정리

따라서 피고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

을 호텔업 등에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실시 항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정서비스업을 호텔서비스업으로 정하여 피고 제1, 2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1, 2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과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 제1, 2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당시 마산의 J관광호텔의 상호를 더 이상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새로운 상호를 모색하던 중 S, M 등으로 마산의 J관광호텔의 상호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 변리사에게 피고 제1, 2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관련 가처분 신청 이후인 2018. 1. 31. 피고 제2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재항고를 취하한 이후인 2019. 11. 29. 피고 제1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포기하였다.

② 위와 같은 피고 제1, 2서비스표의 각 서비스표권 취득 및 포기 경위와 아울러, 앞서 본 원고 제2표장의 주지성과 그에 따른 식별력의 정도, 원고 제2표장과 피고 제1, 2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정도<sup>7)</sup>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지성을 취득한 원고 제2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만 그 지정서비스업에 호텔 관련 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하여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원고 제2표장 등을 모방한 피고 제1, 2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조성물 폐기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

7) 원고 제2표장 '  '과 피고 제1서비스표 '엘시티'는 모두 'M'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다.

원고는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관광숙박서비스업, 호텔서비스업, 호텔숙박시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 제2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제4사용표장(별지 제3목록 기재 표장과 동일하다)의 사용 금지와 아울러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부대청구로서 피고 호텔에서 사용, 보관 중인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이 표시된 수건, 가운에서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의 제거를 구한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침해금지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나,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와 동일하게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서비스표 내지 영업표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고 제2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한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표장 사용료 244,779,500원(=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원고 제2표장 사용료 171,800,000원 +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원고의 표장 사용료 72,979,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44,779,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가 2019. 7.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 7.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 사용 종료일까지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월 12,16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동일·유사한 영업에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룬다.

### [판단]

1) 2020. 12. 24.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 사용 종료일까지의 손해배상청

## 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 변론종결일(2020. 12. 23.)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 사용 종료일까지 월 12,16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의 소'라 한다)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인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년 11월 이후부터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영업표지의 사용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여부가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의 사용 종료일까지 계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의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제4사용표장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로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여부는 미리 확정하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

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1, 2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원고 제1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원고 제1표장 및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 상호권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기초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장래의 이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 2)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영업상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향유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 제2표장을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M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2표장은 위와 같이 실제 영업에 사용됨으로써 영업표지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어도 원고 제2표장에 대한 사용 허락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컨대, 주지의 영업표장을 사용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감정인 V에 대한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J호텔' 또는 'J관광호텔'의 명칭으로 피고 호텔을 운영하다가 피고 호텔 리모델링을 완료한 2017년 9월 무렵부터 2019년 10월 무렵까지 원고 제2표장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피고 호텔을 운영하였는데, 제1심 감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피고의 매출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사용료만 산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원고 제2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영업은 주로 부동산분양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원고가 원고 제2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호텔사업자와 사이에 원고 제2표장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은 호텔업만을 기준으로 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하였고, 더 나아가 호텔업을 기준으로 한 로열티율 산정의 기초 자료인 로열티율 거래 사례 역시 국내와 거래실정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외국의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산정된 로열티율



이 국내의 거래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인의 로열티율 관련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원고 제2표장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제2표장의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과 아울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피고에게 편중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의 사용이 피고의 매출액 또는 이익증가에 기여한 비율 등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극히 곤란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1, 15, 16, 17, 22, 25,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V에 대한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아울러 원고 제2표장의 주지성, 피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영위

한 기간 및 태양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2017. 5.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00,000,000원[= 85,000,000원(2017. 5. 1.부터 2019. 6. 30.까지의 손해액) + 15,000,000원(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손해액)]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호텔 리모델링을 마친 2017년 9월 무렵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피고의 호텔 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년 11월 이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의 피고의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② 피고의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은 2017년 12월의 경우 40,778,000원이고, 2018년의 경우 합계 1,645,248,000원이다. 비록 호텔업의 경우 계절의 변화나 휴가철 등 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이용객 수에 변동이 있고 그에 따라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와 후년도의 같은 기간의 매출액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과 피고의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기간의 매출액은 피고의 위 20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고의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은 약 2,859,579,000원<sup>8)</sup>으로, ㉡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피고의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은 약

8) ㉠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호텔 객실 관련 피고의 추정 매출액은 459,198,000원(= 2017년 9월 매출액 167,184,000원 + 2017년 10월 매출액 132,679,000원 + 2017년 11월 매출액 159,335,000원)이고, ㉡ 2017년 12월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은 40,778,000원이며, ㉢ 2018년 호텔 객실 관련 매출액은 합계 1,645,248,000원이고, ㉣ 2019년 1월부터 같은

637,779,000원<sup>9)</sup>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③ 또한 피고는 피고 호텔을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 관련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는바, 2018년도 행사 관련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고의 행사 관련 매출액은 약 5,568,077,000원<sup>10)</sup>으로, ㉡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피고의 행사 관련 매출액은 약 1,012,377,000원<sup>11)</sup>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④ 피고는 2017년의 경우 호텔 리모델링에 따른 호텔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보았으나, 호텔 리모델링을 마친 이후인 2018년의 경우 약 12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2018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추정 영업이익은 약 6억 원[= 2018년 월평균 영업이익 약 1억 원(약 12억 원/12개월) × 6개월]으로,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추정 영업이익은 약 4억 원(= 2018년 월평균 영업이익 약 1억 원 × 4개월)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⑤ 제1심 감정인은 2018년의 경우 피고의 객실 및 행사 관련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로열티 부과 대상 매출액을 4,663,23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외국의 거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산정한 로열티율 2.96%을 기준으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로열티율이 국내의 거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원고 제2표장과 원고의 영업

---

해 6월까지의 호텔 객실 관련 추정 매출액은 714,355,000원(= 2018년 1월 매출액 61,086,000원 + 2018년 2월 매출액 68,196,000원 + 2018년 3월 매출액 108,660,000원 + 2018년 4월 매출액 113,180,000원 + 2018년 5월 매출액 201,318,000원 + 2018년 6월 매출액 161,915,000원)인바, 위 매출액의 합계액은 2,859,579,000원(=459,198,000원 + 40,778,000원 + 1,645,248,000원 + 714,355,000원)이다.

9)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호텔 객실 관련 추정 매출액은 637,779,000원(=2018년 7월 매출액 155,995,000원 + 2018년 8월 매출액 181,921,000원 + 2018년 9월 매출액 167,184,000원 + 2018년 10월 매출액 132,679,000원)이다.

10) [(2018년 행사매출 3,037,133,000)/12개월] × 22개월(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1) [(2018년 행사매출 3,037,133,000)/12개월] × 4개월(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등을 둘러싼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앞서 산정한 피고의 객실 관련 매출액과 행사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것과 다른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 로열티율을 2%로 가정하여 산정하면, ㉡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고의 객실 및 행사 관련 사용료는 168,553,000원<sup>12)</sup>으로, ㉢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피고의 객실 및 행사 관련 사용료는 33,003,000원<sup>13)</sup>으로 각 산정할 수 있고, ㉣ 로열티율을 1%로 가정하여 산정하면, ㉡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고의 객실 및 행사 관련 사용료는 84,276,000원<sup>14)</sup>으로, ㉢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피고의 객실 및 행사 관련 사용료는 16,501,000원<sup>15)</sup>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원고 제2포장을 사용하여 직접 호텔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 사건 M 사업으로 부산 해운대 일대에 건설된 초고층 빌딩에 대한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고, 2016년 7월 무렵부터 이 사건 M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실제 원고 제2포장에 관한 사용허락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사용료 등을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 피고는 2004년부터 같은 지역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피고의 매출액에는 종래부터 구축한 영업망이나 피고의 영업활동 등의 기여요인에 의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호텔은 3성급의 관광호텔

12)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객실 매출 2,859,579,000원 + 행사 매출 5,568,077,000원) × 로열티율 2%

13) (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객실 매출 637,779,000원 + 행사 매출 1,012,377,000원) × 로열티율 2%

14)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객실 매출 2,859,579,000원 + 행사 매출 5,568,077,000원) × 로열티율 1%

15) (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객실 매출 637,739,000원 + 행사 매출 1,012,377,000원) × 로열티율 1%

로서 피고 호텔이 소재하는 F시 G구가 속한 경상남도에는 피고 호텔과 같은 등급의 3성급 호텔이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F시 G구에는 4개의 관광호텔이 있을 뿐이어서 호텔들 사이의 경쟁이 그다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F시 G구의 관광객의 수요가 특별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2표장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2 내지 4사용표장의 사용이 피고의 매출 내지 영업이익에 기여한 비율은 다른 유명 호텔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피고 제1, 2서비스표의 서비스표등록을 마쳤고, 2018. 1. 31. 피고 제2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의 사용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표장이 사용된 호텔 외장 등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피고 호텔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재개한 이후인 2017.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사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2017. 12. 7. 피고를 상대로 관련 가처분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부정경쟁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2019. 11. 1.부터 2020. 12. 23.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가 2019년 11월 이후 이 사건 제4사용표장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2017. 5. 1.부터 2019.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 85,000,000원 +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그중 위 85,000,000원(2017. 5. 1.부터 2019.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청구와 주위적·선택적으로 이 사건 제1, 2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원고 제1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원고 제1표장 및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또는 (카)목의 각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선택적으로<sup>16)</sup> 원고의 상호와 관련한 상호권 침해행위 또는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저작물(,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는 이상 위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도

16)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순서를 정한 예비적 청구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선택적 청구이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등록서비스표와 원고 제2표장은 모두 'M'로 호칭되어 양 표장은 그 호칭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원고 제2표장은 동일한 표장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각 부정경쟁행위 역시 이 사건 제1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원고 제1표장,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원고 제2표장과 관련된 것인 점, ④ 원고의 상호 '주식회사 A'이라는 명칭도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 및 원고의 업종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피에프브이'17)를 제외한 'M' 부분만이 원고의 상호의 요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 제2표장과 그 호칭이 동일한 점, ⑤ 이 사건 저작물과 원고 제2표장은 동일한 점, ⑥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각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각 나머지 부정경쟁행위, 상호권 침해행위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각 손해배상액과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은 그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손해액18)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각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이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넘어서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용 금액을 넘어서는 위 각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인용 금액 범위 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선택적 또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 제2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

17)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로서 일명 프로젝트금융회사라 한다(을 제12호증 참조).

18) 다만 원고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2017. 12.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침해기간 동안의 사용료 상당액인 171,801,3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장래이행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운형

                 판사      김동규



1. 이 사건 제1등록서비스표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2. 7. 4./2013. 7. 1./제262652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건물임대업, 공동주택관리업, 공장임대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취득대행업, 사무실임대업, 상가관리업, 상가분양업, 상가임대업, 시장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물리모델링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임대업, 건축물건설업, 공장건설업, 공항건설업, 교량건설공사업, 도로건설공사업, 실내장식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건축업, 종합건설공사업, 주택건축업, 택지공사업, 터널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토지개발공사업, 통신공사업, 통신설비 설치공사업, 항만건설업

2. 이 사건 제2등록서비스표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9. 14./2011. 12. 12./제222843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건물관리업, 건물매매업,

건물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건물임대업, 공동주택관리업, 공인중개사업, 공장임대업, 농장임대업, 대형할인점관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수탁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취득대행업, 사무실임대업, 상가관리업, 상가분양업, 상가임대업, 슈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감정업, 주택관리업, 주택알선업, 주택중개업, 토지임대업, 편의점관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가스도관 부설공사업, 가스저장탱크건설업, 간이식건물 조립공사업, 간척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건물개조업,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장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방음설비설치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습기방지업, 건물외벽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정보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 상담업,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공사상담업, 건축물건설업, 건축물바닥공사업, 건축물바닥보수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물해체공사업, 건축석재공사업, 건축울타리공사업, 건축장비임대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건축정보제공업, 건축철물공사업, 경기장건설공사업, 경지정리업, 고가도로건설공사업, 고가로건설공사업, 고속도로건설업, 고속도로유지관리업, 고속전철 및 전철 건설공사업, 골프코스조성공사업, 공원묘지조성공사업, 공원조성공사업, 공장건설업, 공항건설업, 관개시설설치 및 보수업, 광섬유통신망 부설공사업, 교량건설공사업, 교량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굴삭기임대업, 굴정공사업, 굴착기임대업, 그라우팅공사업, 기념비 등의 광고물건축업, 기증기임대업, 낙석방지옹벽 구축공사업, 난간시공업, 냉난방공사업, 니스칠업, 단열공사업, 댐 및 저수시설건설공사업, 도로건설공사업, 도로포장공사업, 도배공사업, 도장

공사를 위한 모래에 의한 연마업, 마루공사업, 목공사업, 목조주택건축업, 묘지석물 설치공사업, 미장공사업, 박람회매점건축업, 발전소건설업, 방수/방습 및 내화공사업, 방음공사업, 방과제건설업, 배관공사업, 벽돌쌓기업, 병원건축업, 보링업, 불도저임대업, 비계설치공사업, 빌딩건설공사감독업, 사무용 건물 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상하수도공사업, 석공사업, 성벽건축업, 소방공사업, 송유관건설업, 송전탑건설업, 수력발전설비 건설업, 수중건설업, 수중준설업, 스포츠경기장 건설업, 아스팔트포장공사업, 아케이드건축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건축업, 암반굴착공사업, 연립주택 리모델링업, 연립주택건축업, 열병합발전소건설업, 오피스텔 리모델링업, 오피스텔건축업, 옥내외도장업, 옹벽공사업, 우물천공업, 운하수로공사업, 원자로건설업, 유리공사업, 의료 시설물 건축업, 잠수 및 수중공사업, 장례식장건축업, 전기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력케이블 부설공사업, 전문공사업, 조선업, 종합건설공사업, 주방공사업, 주상복합건물건축업, 주택건축업, 주택리모델링업,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지붕잇기업, 지역난방설비공사업, 지하갱도 건설업, 지하구조물 건축업, 지하도공사업, 지하방수공사업, 지하철건설공사업, 창고 건설 및 보수업, 창고건설업, 창호공사업, 철골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도건설공사업, 칸막이공사업, 콘도미니엄건축업, 콘크리트공사업, 크레인임대업, 타일공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업, 택지공사업, 터널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토지개발공사업, 통나무주택건축업, 통신공사업, 통신설비 설치공사업,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및 보수업, 파이프라인설치공사업, 폐기물처리시설공사업, 풍력발전설비 설치공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 및 건설업, 학교건축업, 항만건설업, 호텔건축업. 끝.

별지

제2목록

1. 엘시티

2. 

3. lct

4. LCT

끝.

별지

제3목록

LCT

끝.